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2호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Vol. 10. No. 2. pp. 261-294
http://dx.doi.org/10.14698/jkcce.2014.10.2.261

다양한 유아에게 적합한 보육실천 현황 및 발전방안*
: 장애유아, 다문화유아, 영아 및 시간연장필요 유아

정정희** 최효정*** 배재정****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re for Diverse Children

Chung, Chung He Choi, Hyo Jung Bae, Jae Jung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유아를 위한 보육(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 유아보육,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과 통합보육 및 다문화가정 보육과 영아 보육의 현황 및 정책과 이에 따른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장애아 보육과 특수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 대상자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장애전문보육, 장애통합보육, 다문화 가정보육,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보육백서 기획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 교신저자 :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hychoi@pohang.ac.kr)
**** 공동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Ⅰ. 서 론

21세기 세계화에 따른 다원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보육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서비스 내용 및 대상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의 초기에는 보육이 저소득층 아동과 취업모 자녀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으로 강조되었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보육의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 직업유무, 종교, 소득수준, 아동 성별, 인종, 출생 순위, 장애 등에 따라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모든 어린이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영아, 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등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한 부분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육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박재국, 강대옥, 2004; 이승기, 조윤경, 이계윤, 2008). 영유아 보육법(시행 2014. 2. 14.) 제 26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4. 3. 7.) 제 28조에는 이러한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정의 아동,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육을 취약보육이라 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인, 그 밖에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및 원장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 보육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의 경우, 그동안 장애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과 중재를 통해 이들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백운찬, 김관주, 조윤경, 2011). 1995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전까지 주로 사적 기관에서 실시되던 조기 중재와 조기 재활서비스가 정부지원 하에 공적 지원체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남상순, 최외선, 2007). 이후 2003년 3월부터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며, 2004년 「영유아보육법」,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그리고 최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아보육이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특수교육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위의 네 가지 법률체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의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이 특수교육 기능, 돌봄 기능, 재활치료 기능으로 혼재되어 있어 장애아 보육의 정체성 확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재국, 강대옥, 2004; 백운찬 등, 2011). 또한,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통합보육에 대한 선호에 따라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정원의 30%까지 일반 영유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교류와 역할 정립, 통합 교육 시 제공되는 교육과정 선정, 자격을 갖춘 전문 치료사 부족, 일반 어린이집 특수교사 확보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시행과 함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행과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며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관련서비스 실행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총각 결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급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2009년 107,689명에서 2010년에는 13.2% 증가한 121,93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연령층도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75,776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2008년부터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운데 미취학 자녀가 학령기 자녀보다 2.4배 이상이나 많은 반면 보육시설에다니는 유아들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다문화가정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로 언어발달, 자아정체감, 기본생활 습관, 학업성취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후천적 환경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병순, 2008; 오성배, 2006; 정은희, 김태강, 박윤, 2012). 그동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인식개선 관련 교육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강민정, 2008; 김혜숙, 2008; 박형신, 이나영, 2011, 배재정, 2011).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사회적응문제와 아동양육의 문제라는 이중고를 격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들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양육지원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곽승주, 2011).

만 3세 미만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시설은 일반 어린이집 영아반과 특수 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근 들어 영아들의 보육시설 취원 연령이 점점 하향화 되고 영아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경우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2013년 현재 0세와 1세 이용률은 다소 감소하고 만 2세의 경우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영아보육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아들의 발달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전문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순배, 2009; 정순희, 최영미, 이희영, 2013).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시간연장 보육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총 취원생 310,218명 가운데 39,313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5,513명의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재직하고 있어 4,675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2011년 통계에 비해 굉장한 속도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1). 그러나 시간연장 보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영유아들의 적응문제와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서현, 윤경아, 2012).

이러한 취약보육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육 대상자들 가운데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영아,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육의 현황, 연구동향, 정책 및 제도 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취약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장애아보육의 현재

1. 장애영유아 보육 현황

1)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육통계에 따르면,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년도	구분		설립주체별							
			총시설 수 (장애아동 현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가정	부모협동	직장
						법인외 단체	민간개인			
2008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		-	-	-	-	-	-	-	-
	특수보육	장애전담	160 (6,068)	29	93	11	26	1	-	-
		장애통합	756 (3,518)	341	47	39	274	55	-	-
2009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		4,107 (5,404)	247	253	154	2,435	972	16	30
	특수보육	장애전담	168 (6,206)	31	98	10	28	1	-	-
		장애통합	806 (3,469)	400	46	41	262	56	-	-
2010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		4,039 (5,314)	245	242	144	2,344	1.051	13	39
	특수보육	장애전담	166 (6,137)	31	100	5	28	2	-	-
		장애통합	810 (3,487)	453	45	42	227	41	-	2
2011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		3,656 (4,747)	230	231	122	2,117	888	14	54

	특수보육	장애전담	169 (6,152)	33	100	6	28	2	-	-
		장애통합	815 (3,513)	484	46	40	211	32	-	2
2012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		2.741 (3,463)	197	172	108	1,734	461	17	52
	특수보육	장애전문	171 (5,994)	34	100	7	28	2	-	-
		장애통합	836 (3,565)	527	43	42	195	26	1	2
2013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		1,928 (2,395)	144	129	81	1,189	336	13	36
	특수보육	장애전문	172 (5,883)	36	100	7	28	1	-	-
		장애통합	867 (3,689)	571	43	39	186	25	1	2

<출처> 보육통계(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우선,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 수는 2009년 5,404명에서 매년 크게 줄어들어 2013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95명으로 줄어들었다. 장애아동이 다니는 일반어린이집의 수도 2009년 4,107개소에서 매년 크게 감소하여 4년동안 총 2.179개소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1,928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보육에 해당하는 장애전담 혹은 전문 어린이집의 시설 수는 2008년 160개소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 5년 동안 총 12개 시설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172개소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전담 혹은 전문 어린이집의 현원 수는 2008년 6,068명에서 2013년에는 5,88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또 다른 특수보육 형태인 장애통합 시설 수는 2008년 756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5년 동안 111개가 늘어나 2013년에는 867개소가 되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취원한 장애아의 수 역시 2008년 3,518명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3,469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3,689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특수보육미지정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장애전담 혹은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수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수는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설립주체별로 장애전담 혹은 전문시설의 수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은 반면, 장애통합시설은 국공립시설과 민간 개인 보육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보육 내실화를 위해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온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민간 개인 보육시설의 경우통합보육을 가장 선호하는 장애아 부모의 요구와 장애통합 민간 지정 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2) 장애영유아 현황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장애아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영유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유아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변화가 많은

시기이며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장애명을 확정짓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발달지체나 장애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달지체란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보다 훨씬 더 어린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영유아와 같은 수행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아에 대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역시 무상보육 대상자이다.

2008년 이후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 현황을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현황

년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2008	15,644		1,081	913	1,593	1,979	2,244	7,834
2009	15,083		831	963	1,652	2,059	2,311	7,267
	남	10,016	513	599	1.071	1,417	1,598	4,818
	녀	5,067	318	364	581	642	713	2,449
2010	14,938		694	898	1,872	2,240	2,209	7,025
	남	9,.979	416	553	1.265	1,501	1,556	4,688
	녀	4,959	278	345	607	739	653	2,337
2011	14,405		548	699	1,681	2,501	2,294	6,682
	남	9,647	318	433	1,080	1,732	1,576	4,508
	녀	4,758	230	266	601	769	718	2,174
2012	13,022		298	403	1,252	2,281	2,612	6,176
	남	8,806	166	252	819	1,561	1,832	4,176
	녀	4,216	132	151	433	720	780	2,000
2013	1,1967		232	351	1,084	1,983	2.221	6,096
	남	8,143	138	217	727	1,376	1,540	4,145
	녀	3,824	94	134	357	607	681	1,951

<출처> 보육통계(각연도별). 보건복지부.

보육료지원 현황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년 그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세 이상인 장애아동은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취학 연령인 만 6세 이상의 장애아동들이 취학 유예를 하고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져 나타난 현상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장애남아의 수가 장애여아의 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5세 이상이 되면 그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장애영유아 보육 관련 법규 및 제도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유아보육법은 제정 이래 22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4년 전면 개정된 이후로 장애아 보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아동 무상보육 특례(영유아보육법 35조), 취약보육 우선실시(영유아보육법 26조), 장애아동 보육기관 원장의 자격 기준과 설치 기준, 종사자 배치 기준, 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장애전담과 통합 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그 제정 목적이 전체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아동 보육에 관한 선언적 조항 2개 규정과 무상보육에 관한 1개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되던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2012년 이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그 명칭과 시설 기준이 수정되었다. 즉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아동 보육은 매년 제시되는 보육사업지침(조윤경, 2009)에 근거하거나 이후 제정된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체계로 충분하지 않다.

2)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은 1977년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2007년 5월에 제정되었다. 장애아동 보육과 관련된 특수교육법의 주된 내용은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애영유아와 유아에 대한 교육을 4명당 1학급 혹은 장애아동 4명당 교사 1인으로 명시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에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나머지 교사진은 보육교사로 배치하고 있으며 치료사 배치 역시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전국의 장애아동 보육기관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 수가 기관 당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운찬 등, 2011).

〈표 3 〉 특수교육법

구분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법(2007)
	1977년 제정 (1977-1994)	1994년 개정 (1994-2007)	
특수교육의 목적	·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교육 사회생활 기여	· 자주적 생활 능력 신장 · 생활 안정 · 사회참여 기여	· 통합교육 환경 제공 및 자아실현 · 사회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7종 (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언어장애)	9종-학습장애와 건강장애 추가(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11종-발달지체를 추가하고 자폐를 정서·행동장애와 분리하고 언어장애를 의사소통장애로 명칭 변경(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자폐, 발달지체)
통합교육	없음	희망 시 일반학교 배치 가능 일반학교 내 편의시설 의무화	희망 시 일반학교 배치 가능 일반학교 내 편의시설 의무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초·중 의무교육 유·교 무상교육(1998년 완성)	초·중 의무교육 유·교 무상교육(1998년완성)	유·초·중·고 의무교육 2세 이하 무상교육(어린이집 포함)

<출처> 김원경, 조홍중, 허승순, 추선구, 윤치연(2008). 최신특수교육학. 학지사, p.62

3)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1일 제정되어 모든 보육기관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차별행위가 금지되며, 2013년부터는 보조공학기, 이동편의, 편의 시설 등 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전문보육기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2.19점으로 보통 정도이며, 법 시행 이후 장애아전담보육기관의 환경이 비교적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욱, 백운찬, 류종열, 김관주, 2010).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년 8월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이고 시혜적 복지를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기관과 학교, 복지관, 보건소, 병·의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과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 지원, 가족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보육 실제 면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했으나 2012년 이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수정되었으며 상시 보육해야 하는 장애영유아 수도 18명에서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보육교직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2014년 이후 원장 자격이 종전의 자격보다 강화되어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에 관한 내용도 강화되어 2016년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1) 원장

2014년 3월 이후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 4>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종전	2014년 3월 이후
자격 기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졸업 증명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졸업 증명서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경력증명서(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경력증명서(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

<출처> 보육사업안내(2014)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역시 2016년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되어 시행된다. 강화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3항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만 하고 동시에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한다. 이러한 강화된 자격조건은 2016년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7년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만 3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3월 1일까지 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된 직무교육과정을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3)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현재 장애아동 보육기관의 특수교사, 치료사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며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수교사의 자격 인정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 교사 자격증은 취득한 자, 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 졸업인정 기본교과목 중 8과목 1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보육사업안내, 2011). 치료사의 자격기준은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한국 연구재단에 등

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이다(보건복지부, 2011).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와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그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유사과목확인서(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특수교사자격인정관련 이수교과목 중 8과목 이상 16학점 이상)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대하여 해당 관청조차도 무지한 경우가 많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속한 관청에 따라 기준 충족이 달리 되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다(김영숙, 2008).

최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보건복지부, 2012) 역시 특수교사 배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특수교사를 양성하지 않는 보건복지부가 교사 3인당 한명을 특수교사로 배치하도록 장애아복지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의 수급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특수교사를 배출하는 교사양성과정이 없고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능력 등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과 인프라 등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게 됨으로서 보육의 특수교육적 질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4. 장애전문 어린이집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의 독특한 재활욕구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라는 취지에서 1996년부터 장애아 전담 보육을 우선 사업목표로 정했으며, 1997년부터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국고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해왔다(조재규, 2012). 이러한 특수보육시설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통합보육을 지향하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형 보육제도이다(강미라, 2007). 2012년 이전에는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명칭 또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

(1) 장애전문 어린이집 현황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미지원 어린이집)

연도	전문(전담) 시설 수	정원	보육아동		
			현원		
			계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2008	160	7,873	6,512	6,068	444
2009	166	8,024	6,632	6,137	495
2010	168	8,357	6,832	6,206	626
2011	169	8,154	6,688	6,152	536

2012	171	8,178	6,769	5,994	775
2013	172	8,251	6,775	5,883	892

<출처> 보육통계(각연도별). 보건복지부.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시설 수와 정원수가 조금씩 증가한 반면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만으로는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비장애 아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운영이 쉽지 않으며 그 존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보육교직원 현황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장애아 전담 혹은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년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기타
			장애아	그외				
2008	2,815	160	1,298	-	687	432	164	74
2009	3,056	166	1,228	106	818	484	168	86
2010	3,102	168	1,335	113	734	491	170	91
2011	3,112	167	1,199	112	856	498	170	110
2012	3,159	169	954	147	1,114	459	174	142
2013	3,234	172	904	207	1,120	467	180	184

<출처> 보육통계(각연도별). 보건복지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보다 특수교사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치료사와 특수교사의 수가 매우 적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과는 달리 언어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와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 시설기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만을 12명 이상 보육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해 지정받은 보육시설이다.

<표 7>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나. 장애아동만을 12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동 전담보육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의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이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기관은 장애아동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 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동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 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 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 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9조

(4) 교직원 체계 및 배치기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뿐 아니라 조기 재활서비스 및 치료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직원 체계도 일반 보육교사는 물론 특수교사와 치료사도 필요하다. 장애아 전담 보육기관의 교직원 유형 및 인건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8〉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교사 유형 및 인건비 지원 기준

구분	원장	보육교사 (종일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방과후 장애아)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배치 기준	장애아동 상시 (12인이상)	장애아동 3명당 1인	장애아동 3명당 1인	장애아동 9인당 1명	장애아동 9명당 1인	장애아동 상시 12명 이상
지원 기준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월 지급액의 100%

4.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들의 비율이 매년 점점 증가하는 반면,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분리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 비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무상교육 수혜자의 60%가 넘는 것을 볼 때 장애 유아 통합교육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보육 미지정 시설에서 일반유아와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아를 고려하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들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표 9> 장애전문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황

연도	장애전문 어린이집 (%)	장애통합 어린이집(%)
2008	6.068(63.3)	3.518(36.7)
2009	6.632(65.7)	3.461(34.3)
2010	6.206(64.0)	3.487(36.0)
2011	6.152(63.7)	3.513(36.3)
2012	5.994(62.7)	3.565(37.3)
2013	5.883(61.5)	3.689(38.5)

또한 미국의 경우 장애 유아가 배치된 시간의 80% 이상을 일반학급에서 보낼 때 통합교육으로 고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가 있는 유아들이 장애가 없는 유아들과 함께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교육받는 것을 모두 합해 통합교육으로 칭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통합이나 일시적인 통합까지도 모두 통합교육 수혜자로 고려된다(이소현, 2005).

(1) 시설 현황

최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시설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10>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연도	통합시설 수	보육아동			
		정원	현원		
			계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2008	756	64,360	55,899	3,518	52,381
2009	806	69,324	60,572	3,469	57,103
2010	810	72,067	64,542	3,487	61,055
2011	815	73,681	66,151	3,513	62,638
2012	836	76,924	70,286	3,565	66,721
2013	867	79,144	71,506	3,689	67,817

<출처> 보육통계(각연도별). 보건복지부.

(2) 보육교직원 현황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년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기타
			장애아	그외				
2008	3,290	756	1,086	-	297	39	803	309
2009	9,494	806	815	5,952	352	45	895	629
2010	10,057	806	734	6,388	417	48	988	676

2011	10,435	807	707	6,622	472	52	1.072	703
2012	11,231	829	635	7,158	593	57	1,188	771
2013	12,441	865	634	8,048	649	59	4,254	932

<출처> 보육통계(각연도별). 보건복지부.

(3) 시설기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보육은 실제 장애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형태임에도 불구하고(조재규, 2012), 이러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기준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50.2%와 법인단체어린이집의 43.5%가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고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4) 교직원 체계 및 배치기준

장애통합 어린이집 역시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인 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1인 및 장애아 전담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미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여 장애아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일반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인건빌ㄹ 지원하게 된다(보육사업안내, 2014).

Ⅲ. 다문화 보육의 현황

1. 다문화 영유아 보육 현황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보육시설 취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2008	전국총계	20,920	2,287	2,959	1,299	10,408	3	3,891	73
	대도시	6,811	993	442	221	3,745	2	1,387	21
	중소도시	6,034	389	356	234	3,293	1	1,740	21
	농어촌	8,075	905	2,161	844	3,370	-	764	31
2009	전국총계	26,412	2,855	3,438	1,697	13,234	6	5,103	79
	대도시	8,259	1,130	437	280	4,642	5	1,736	29
	중소도시	7,498	472	376	267	4,087	1	2,277	18
	농어촌	10,655	1,253	2,625	1,150	4,505	-	1,090	32
2010	전국총계	30,319	3,412	3,952	1,903	15,069	6	5,885	92
	대도시	8,687	1,183	438	284	4,942	4	1,803	33
	중소도시	8,613	622	363	270	4,675	1	2,654	28
	농어촌	13,019	1,607	3,151	1,349	5,452	1	1,428	31
2011	전국총계	47,012	5,041	5,367	2,521	23,940	4	9,943	196
	대도시	13,946	1,779	621	398	7,998	2	33,063	85
	중소도시	14,923	1,077	550	361	8,097	1	4,771	66
	농어촌	18,143	2,185	4,196	1,762	7,845	1	2,109	45
2012	전국총계	52,120	6,331	5,965	2,889	27,005	13	9,694	223
	대도시	15,494	2,351	731	422	8,940	5	2,944	101
	중소도시	16,475	1,458	648	458	9,141	1	4,697	72
	농어촌	20,151	2,522	4,586	2,009	8,924	7	2,053	50
2013	전국총계	52,942	7,458	6,175	3,057	27,351	29	8,624	248
	대도시	15,455	2,816	770	432	8,709	15	2,604	109
	중소도시	16,994	1,930	771	523	9,525	7	4,158	80
	농어촌	20,493	2,712	4,634	2,102	9,117	7	1,862	59

<출처> 보육통계(각연도별). 보건복지부.

<표 12>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취원아 수는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약 17,000여명이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기준으로 52,120명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지역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어촌 지역에 가장 많이 취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기관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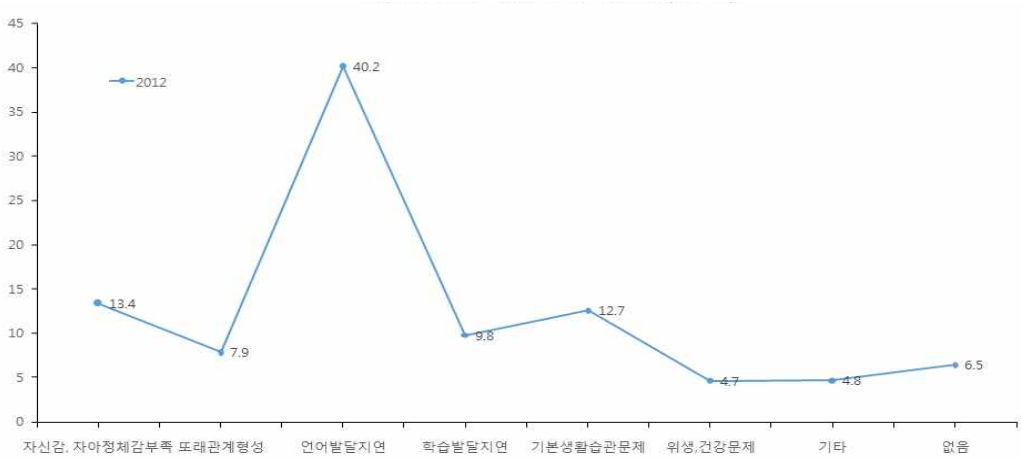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려움

<출처>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원자료 재구성)

[그림 1] 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직면한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언어발달 지연문제인 것(40.2%)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이나 자아정체감 부족(13.4%), 기본생활습관(12.7)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취약은 인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언어습득환경의 결핍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이주자 가정 자녀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낮은 발달수준이 보고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도 이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한글지도(43.4%)를 가장 많이 실시한다고 보고하고 있고(보건복지부, 2012), 인지발달 프로그램(37.9 %), 사회정서 지원프로그램(36.2%), 부모교육, 이중언어 프로그램(13.4%), 알림장 번역서비스(8.6%) 순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보육시설 이용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 보육시설 이용의 장애요인에 대한 김소영의 연구(2010)에서 부모상담 및 교육 시 한국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와는 달리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부모 알림장 번역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은 전체 45.6%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교육(40.9%)과 보수교육(35.8%)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2).

2.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관련법과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에서「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아로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보육의 법적근거가 되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통상적으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에 한정하고 있다(정희영, 2009). <표 14>는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지원 관련 조항 개정 실적이다.

〈표 14〉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개정일
영유아보육법	-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신설 - 무상보육 특례에 취학직전 1년 유아와 장애아 포함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추가	2011.06.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무상보육대상자를 취학직전 만 5세아에서 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변경	2011.09.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추가	2009.12.31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영유아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에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명시함으로써 우선 취원을 보장하고 있다.

Ⅳ. 영아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 현황

1. 영아보육

1) 영아보육 현황

만 3세 미만의 영아보육은 일반어린이집의 영아반 보육과 특수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전체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영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2008년~2013년 보육시설 취원영아 현황

구 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2008	만0세	99,245	2,210	2,780	1,052	24,295	29	68,375	504
	만1세	160,320	11,190	10,392	4,456	61,505	153	70,385	2,239
	만2세	242,324	23,130	22,330	9,710	128,396	281	54,703	3,774
	소계	501,889(36.2%)							
2009	만0세	107,525	2,542	3,048	1,172	27,538	31	72,629	565
	만1세	198,831	13,779	12,560	5,214	77,337	147	86,929	2,865
	만2세	268,038	26,010	23,040	10,023	141,444	362	62,774	4,385
	소계	574,394(41.01%)							
2010	만0세	125,133	2,755	3,190	1,080	31,181	53	86,225	649
	만1세	229,486	15,245	12,972	5,110	90,926	159	101,678	3,396
	만2세	331,637	29,081	26,283	10,585	178,607	427	81,340	5,314
	소계	686,256(49.43%)							
2011	만0세	146,666	3,147	3,200	1,154	36,931	107	101,229	898
	만1세	249,787	16,512	13,157	5,149	99,595	223	111,249	3,902
	만2세	342,879	30,233	25,328	10,322	184,422	487	85,992	6,095
	소계	739,332(53.52%)							
2012	만0세	177,575	3,418	3,434	1,283	43,717	168	124,474	1,263
	만1세	321,716	18,576	15,264	6,197	130,442	399	145,610	5,228
	만2세	372,811	31,629	25,528	10,589	202,625	682	94,908	6,850
	소계	872,102(63.03%)							
2013	만0세	148,273	3,595	2,958	1,131	35,713	190	103,347	1,339
	만1세	325,921	19,791	14,597	6,114	128,165	438	150,693	6,213
	만2세	400,781	33,508	26,244	11,162	215,115	806	105,795	8,151
	소계	874,975(62.84%)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영아들의 보육시설 취원 인원은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증가추세이며 통계청 추계영아인구에 준해서도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 0세아는 2008년 99,245명, 2009년 107,525명, 2010년 125,133명, 2011년 146,666명으로 해마다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177,575명으로 그 전 해보다 약 30,000명의 양적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세 아동 2008년 160,320명, 2009년 198,831명, 2010년 229,486명, 2011년 249,78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321,716명으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중 가장 많은 양적 증가를 보여주었다. 2세 영아 또한 많은 양적증가를 보였는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242,324명, 2009년 268,038명, 2010년 331,637명, 2011년 342,879명으로 2008년에 비해 2011년에는 100,000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취원율 증가는 영아기 양육에서 기관이용이 보편화됨으로 인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이용시기가 앞당겨지고 영아무상보육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이정원, 2013).

2013년 3월부터 실시된 「만 0-5세 전계층 보육·양육지원」으로 인하여 가구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2년의 영아 취원율이 향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3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2년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연령별로 살펴보자면 2013년 3월 현재 0세와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하였고, 만 2세의 경우 전체 이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영아가 취원하는 보육시설 중,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로 원장과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시설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영아전담어린이집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 법인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단체등	민간개인			
2008	어린이집수	665	61	229	58	262	-	55	-
	아동현원	24,398	2,431	10,136	1,900	8,942	-	989	-
	보육교사수	6,323	654	2,446	518	2,378	-	327	-
2009	어린이집수	667	59	228	52	266	-	72	-
	아동현원	24,748	2,507	10,375	1,706	8,964	-	1,196	-
	보육교사수	4,900	497	1,928	350	1,830	-	295	-
2010	어린이집수	648	57	226	29	283	-	53	-
	아동현원	25,111	2,536	10,720	934	9,931	-	990	-
	보육교사수	4,732	489	1,909	179	1,947	-	208	-
2011	어린이집수	638	56	223	23	282	-	54	-
	아동현원	24,653	2,549	10,447	764	9,866	-	1,027	-
	보육교사수	4,630	478	1,856	149	1,916	-	231	-
2012	어린이집수	629	57	220	21	277	-	54	-
	아동현원	25,497	2,603	10,768	753	10,332	-	1,041	-
	보육교사수	4,685	489	1,875	148	1,953	-	220	-
2013	어린이집수	629	61	220	21	273	-	54	-
	아동현원	24,595	2,603	10,380	837	11,462	-	1,058	-
	보육교사수	4,554	497	1,817	145	1,875	-	220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설 추이를 살펴보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시설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용하고 있는 전체 영아수도 연도별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및 육아전문파견프로그램 등과 같은 개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1). 이러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인 경우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조부모지원 이용이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25).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유해미 외, 2011), 조부모에 의한 돌봄은 0세 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영아가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울까봐 개인 양육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아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어린이집 중심 뿐 아니라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2) 영아보육 정책

영아보육에 대한 정책은 출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육아지원정책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영아보육의 정책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한 직장근로자 지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7>과 같이 영아보육비 지원 기준단가는 연도별로 다소 증가해오고 있는데, 2014년 현재 영아는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0세 아동은 월 755,000원, 만 1세 521,00원, 만 2세 401,000원이다.

<표 17> 영아보육 비용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2009~2010년			2011~2014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금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지원단가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시에는 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지원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액수도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으로 차등화 되었다. 2012년에도 동일하게 지원되다가,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 보육·양육지원”으로 가구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었다.

<표 18> 영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현황

구분	2009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3월이후
대상	차상위 이하 24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24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전계층 84개월 미만
지원 내용	월 10만원	월 10만원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2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소득수준과 연령제한을 없앤 양육수당제 도입은 정책적으로 부모들 간의 정부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고 부모의 영아양육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황옥경, 2013).

2. 시간연장형보육

1) 시간연장형보육 현황

최근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부모의 취업준비 등의 다양한 보육시간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시간연장형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간연장형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을 포함한다. 시간연장 보육은 기준시간 초과(19:30~24:00)에 관한 보육을 의미하며, 야간보육은 야간(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를 의미하며, 24시간 보육은 부모의 야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7:30~19:30)도 이용하고 야간보육(19:3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형태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휴일보육이 있는데 이는 일요일 및 공휴일 즉, 휴일을 이용한 보육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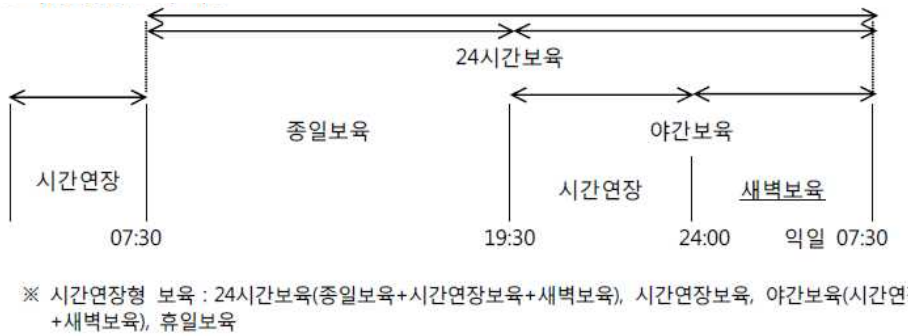

[그림 2]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

<출처>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 19>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간연장	개소	3,910	4,666	6,535	7,844	8,164	8,705
	아동현원	16,278	22,848	31,371	39,313	39,287	41,052
	교사[2)]	12,319	3,778	4,675	5,513	5,995	9,054
휴일	개소	152	166	207	238	287	269
	아동현원	13	503	558	461	572	489
	교사[3)]	198	266	411	473	522	209
24시간	개소	125	138	230	268	268	284
	아동현원	546	520	945	900	871	853
	교사[4)]	416	120	258	293	314	305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보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법인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의무화와 민간보육시설 지정 시설 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근 6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정 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정부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실시로 인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수가 2010년 6,535개에서 2011년 7,844개로의 확연한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연장형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를 살펴보면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2008년 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 아동이 증가하다가 2012년에 소폭의 감소를 보였고 2013년 다시 증가하였다.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2012년 보다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6년간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살펴보면 휴일보육 실시 어린이집수의 증가폭에 비하여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 증가는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24시간보육은 2008년 125개소에서 2009년 138개소, 2010년 230개소로 약 100개소가 그 전해 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많이 늘어났고, 2013년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4시간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2009년 520명에서 2010년 945명으로 가장 많은 양적 증가를 보였으나 그이후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 대부분이 퇴근이나 다른 일로 저녁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없어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시간연장형보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설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시간연장형보육 정책

시간연장 보육은 해당시설의 주간보육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별도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탁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겸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나 주간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보육을 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19: 30분에서 21: 30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를 전후하여 연속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보육료는 기준시간을 초과(19:30~24:00)한 경우와 토요일의 경우(15:30~24:00)의 보육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2,700, 장애아동은 3,700원으로 지원된다. 시간연장 보육료의 지원한도액은 매월 60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가구는 주로 맞벌이 가구로서 부모의 늦은 저녁퇴근 시간으로 인해 이용하고 있어 실재 이용하는 시간이 월평

2) 보육교사 구분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3) 시간연장/휴일반을 맡고있는 보육교사
4) 24시간 보육교사: 보육교사 구분이 24시간 보육교사

균 78.67시간(보건복지부, 2012)으로 나타나 현재의 60시간보다 더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양육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2008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연장 보육 확대가 추진되었고, 정부는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통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 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용 아동수도 크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틈새 대상인 취업모의 자녀를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의 확대를 통하여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음을(김영지, 2009)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질적인 수준은 양적인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최진화, 2010)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교사의 근무시간이 19시 30분~21시 30분 동안을 포함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늦은 퇴근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근무해야 한다 등의 규정 마련을 통해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강화도 더불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V. 연구동향

1. 장애아 보육 연구 동향

장애유아 보육관련 연구들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연구들이 주로 장애 전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후반부터는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통합 보육 관련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아 전담 보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장애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과 중재를 통해 교육해야 한다는 장애아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교사 양성, 교육 시설 및 설비 확충 등 조기 특수 보육의 중요성과 기반 시설 확립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영유아에 비해 장애아들은 조기 발견과 교육 및 치료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들과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 보육 시설과 교육 내용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밝혀주고 있다.

둘째, 짧은 기간 동안 장애아 보육이 정책적 지원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숫자는 늘어났으나 장애 부모의 상당수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정병오, 2011; 차순호, 2011) 질적 수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현황 및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의 논쟁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영아부터 방과 후 아동인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과 특수교육, 치료지원 등의 관련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백운찬

등, 2011). 더불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의 유형과 정도 역시 매우 다양해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들 역시 다양한 전공과 학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상황과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분리시켜 놓은 형태만을 기준으로 전담이라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특수보육의 형태로 지원하는 현재 상황에서 장애 전담의 필요성은 그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조윤경, 2011). 최근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위치와 정체성은 더욱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유아 통합 보육관련 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장애 통합보육에 관한 원장, 교사, 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장, 교사, 부모의 인식과 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교사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교수-학습 활동을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합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념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들이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이념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밝혀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통합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그리고 장애유아에 대한 긍정적 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통합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교수효능감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교사들의 통합교육에서의 교수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관련 연구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이에 관한 연구들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Cardona, 2009).

둘째, 장애 통합보육을 실시한 후 통합보육이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연구자들은 통합보육의 효과를 살펴볼 때 통합학급에서 교사들이 주로 사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장애유아의 개별적 중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중재 방법 이외에도 일반유아와 장애유아 간의 협동학습이나 또래교수,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적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보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의 연구대상이 주로 장애유아나 일반유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교육기관, 가족, 교사를 포함한 통합보육 효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육현장에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교육 인력이 부족하여 일반 유아교사가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참고하여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육 실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통합교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같은 학급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물리적 차원에서

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활동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의미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지적, 사회적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요구를 가진 개별 유아의 교육적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이라 볼 수 있다(김성애, 2007).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통합교실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모두를 고려한 통합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 최소 제한 환경 정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김민석, 2010; 이금주, 2010) 이에 관한 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 측면에서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사회적 기술습득과 사회적인 분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적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화의 방안으로 고려되어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일반유아에게도 통합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일반유아와 장애유아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장애 통합보육의 실태, 정책 등과 관련된 통합보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통합교육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 및 이에 근거한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 통합교육을 위한 행정지원과 정책 관련 연구들이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실제적인 행정제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의 통합교육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구체적으로는 통합학급에 필요한 특수교사 및 관련보조교사, 각종 시설과 기자재, 학습 자료, 학급 당 학생 규모 등에 관한 교육시스템적 지원과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김남순, 2005).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발견과 진단영역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한민경, 2013). 현재 어린이집 교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진단하는 데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영유아의 발달상태가 '지연 혹은 지체' 인지, 부모들이 주장하는 '늦된 현상' 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유아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발견 및 진단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진단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유아교사들이 이러한 교육과정과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유아를 발견하고 진단, 교육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관련 연구동향

2006년「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문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기관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김병순, 2008; 홍영숙, 2007)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와의 놀이에 어울리지 못하고 또래와의 협동놀이보다는 혼자놀이나 배회하기를 나타내 보여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같은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교사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비슷하게 아주 짧은 대화유형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홍영숙(2007)는 이러한 원인을 낮은 한국어 이해와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정정희(2006)는 대구·경북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글구사 능력과 자녀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증진과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송효연, 2009; 형근혜, 허기, 홍혜경, 2014)가 이루어져 이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와 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단선적인 아동양육지원프로그램이 아닌 자녀와의 대화법과 질문방법 등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실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교육활동에 관한 연구들(강민정, 2008; 김혜숙, 2008; 방은영, 2012; 박형신, 이나영, 2011; 윤문숙, 2004; 이선미, 송지연, 2008)로 대부분 교수학습방법 차원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직접 대면해야하는 교사들이 다문화적 인식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재정,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정희, 이효림, 2013; 현정환, 2010). 또한 다문화역량에 대한 연구들과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정정희, 이효림, 2014)와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전재영, 2011)과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련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영아보육 연구동향

영아보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과 영아반 교사 및 영아보육에 대한 연구들로 나누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먼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발달적 측면에서 애착과 기관적응과 관련된 연구(김유진, 2003; 김윤숙, 조희숙, 2011; 이명주, 유연옥, 2011)와 영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영아들의 돌봄의 여러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도 이루어져 오고 있다. 영아교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영아교사가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지식, 스트레스와 어려움(김옥주, 조혜진, 2010; 이진희, 임진형, 2004; 탁정화, 황해익, 2012), 자질과 관련한 연구(김현주, 2013) 및 초임 영아교사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조혜진, 2007; 최지현, 권경숙, 2012)도 있었다. 특히 영아교사의 전문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예비교사교육기관에서 유아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다가 예비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4년부터 보육필수영역에 영아발달부분을 강화함으로 예비교사교육기관에서 영아보육에 대한 역량을 보강하고자 하나 영아보육과 관련한 내용과 방법을 더 많이 반영하는 교과목이수의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백은주, 한선아, 강민정, 2011)도 이루

어져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아기 보육이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 애착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고 있어 영아 보육프로그램들의 애착발달과 관련한 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시간연장형 보육 연구동향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원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야간보육의 수요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시간연장 보육의 사회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 그리고 최현진(2004)의 연구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와 질 높은 야간 보육과 24시간 보육에 대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서문희, 양미선, 권미경 그리고 김혜진의 연구(2011)에서는 질 높은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사회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야간보육과 관련한 연구(강문희, 김매희, 이경희, 정정옥, 2000; 서원경, 최석란, 2005; 서원경, 2006)에서는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취약성과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고(강문희 외 2000), 보호 역할이 중요한 야간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애착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해보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는 늘어나는 시간연장형 보육 수요에 비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질적 프로그램 모색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Ⅵ. 논의 및 제언

최근 보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 서비스 대상의 다양화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보육,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보육 분야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과 정체성 확립이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아 보육을 포함한 취약보육의 특성과 현황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의 전담과 통합의 구분을 없애고 장애아동 2명 이상의 모든 보육기관을 장애아동 보육기관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승기, 조윤경, 이계윤, 2008)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치료의 전문성 기능을 최대한 살려 보육기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장애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조윤경, 2010)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통계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아전담보육기관의 아동정원 대비 현원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70.1%, 2009년 65.6%, 2010년 64.7%, 2011년 62.1% 순으로 매년 종일반 아동

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방과 후의 경우 2008년 27.9%, 2011년 31.1%로 점차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장보협, 2011). 반면,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장애아동은 2008년 1.8%에서 2011년 6.8%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비장애 영유아수는 근소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동시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의 장애분류를 살펴보면, 진단서 아동과 발달지체 아동은 다소 감소하고 뇌병변장애 및 자폐성장애 등 장애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통합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중증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백운찬 등, 2011). 이처럼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이 통합기관으로 변모하거나 반대로 중도·복합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둘째,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데 있어 특수교사자격의 문제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07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의 자격인정'을 이수과목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수정보완 되었으나, 장애아 보육전문가로서의 제도적 체제는 사실 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은 자격인정제도로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보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해당관청에 "유사과목확인서"를 제출한 뒤 보육기관 채용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보육시설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수교사가 관청을 대상으로 설득하게 되는 비전문적인 상황들도 초래되고 있다. 이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장애통합 보육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 유아 지원체계를 통합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통합교육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 방향이므로 장애유아의 지원체계도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장애통합보육의 성공을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역할정립,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포함하는 지원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통합교육이 활성화 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통합 교육과정의 부족, 통합보육에 관한 기관장과 교사의 인식 문제,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행·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장애 통합관련 정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비 지원과 같은 양적 증가에만 의존하는 정책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통합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되어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연수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공적 통합은 보육분야 뿐 아니라 특수교육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학급 담당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 확립과 함께 물리적 환경조정,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수정, 특수교사의 협력 등에 관해 문제해결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다문화보육과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에 관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 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 가운데 보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제공과 보육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교육을 위해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원장 및 교사들의 다문화 인식교육 제공이 중요하다. 교사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다문화 교육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시행된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74.5%로 향상되어, 이들의 기관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2011),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 방과 후 지도나 언어교육에 국한되어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의 교육내용과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아보육에서 최근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동에 대해 배려와 부모의 선택권 관점에서 양육수당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위하여 개인양육서비스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영아보육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간연장형보육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혼합연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특히 야간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제공율은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최인수, 송미연, 2002). 또한 보육시설에서 수요자 중심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확대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보육효과성 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연령 차이에 대한 규정이나 프로그램참여 아동 수에 대한 하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용 아동수가 적다는 점과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함께 있어야 하는 점을 시간연장 보육의 단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질과 연관된다(서문희, 양미선, 2013). 참여 아동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아동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수록 양질의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강문희, 김매희, 이경희, 정정옥(2000). 야간 및 24시간 보육실태 및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2**, 27-56.

강미라(2007).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교육진단·평가 실제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현황.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2), 1-29.

강민정(2008). 다문화 내용의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 및 사고에 미치는 효과.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곽승주(2011). 24시간 다문화보육시설의 존재와 운영의 의미에 대한 이해: 시설장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5**(1), 417-442.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아를 위한 장애 이해 및 통합교육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남순(2005).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정책 분석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3), 255-277.

김민석(2010). 장애유아 통합교육 실태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병순(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98-138.

김성애(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통합교육연구, 2**(2), 1-25.

김소영(2010).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숙(2008). 장애아보육정책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4), 311-328.

김영지(2009). 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 실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옥주, 조혜진(2010). 영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보육시설 조직문화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2), 193-209.

김용욱, 백운찬, 류종열, 김관주(20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의 인식과 실천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4**(4), 85-104.

김유진(2003). 영아의 안정애착 유발요인 연구. **아동복지연구, 2**(2), 1-15.

김윤숙, 조희숙(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1**(6), 121-146.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 최현진(2004).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채린(2012). 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요구조사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주(2013). 영아교사 관련 주제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4), 401-419.

김혜숙(2008). 어린이집 생활주제와 통합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상순, 최외선(2007).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8**(4), 209-227.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박재국, 강대욱(2004). 장애유아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6**(1), 37-58.

박형신, 이나영(2011). 다문화적 접근에 의한 음악활동에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10.

방소영, 황혜정(2011). 위스타트(We Start) 언어중재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용·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7), 51-66.

배재정(2011). 교사가 지각한 유아 다문화교육의 내용. **유아교육연구, 31**(4), 143-163.

백운찬, 김관주, 조윤경(2011). 장애아동 전담 보육기관의 현황과 교직원들의 정체성 인식 및 미래지향방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385-411.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보건복지부(2008).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_____(2009).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_____(2010).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_____(2011).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_____(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_____(2013).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_____(2014). 20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서문희, 양미선(2013).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59-276.

서문희, 양미선, 권미경, 김혜진(2011).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원경(2006). 야간보육교사의 애착에 대한 인식 및 상호작용변화에 따른 영아와의 애착증진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13-247.

서원경, 최석란(2005).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42**, 253-277.

서 현, 윤경아(2012). 시간연장 보육을 받는 유아의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5), 347-373.

송효연(2009).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윤갑정, 고은경(2006). 다문화적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윤문숙(2004). 유치원 반편견 교육활동에 관한 교사의 인식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금주(2010). 장애유아 통합교육 운영 및 지원실태 조사 연구: 인천광역시 공·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명주, 유연옥(2011).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1-20.

이선미, 송지연(2008). 보육교사의 다문화교육 신념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3), 185-214.

이소현(2005). 장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고찰. **유아교육연구, 25**(6), 277-305.

이수련(2011). 장애유아 통합교육 관련 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32**(6), 1-14.

이순배(2009). 영아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장려의 관계. **한국지역혁신논집, 4**(2), 57-78.

이승기, 조윤경, 이계윤(2008).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이정원(2013). 가정양육지원의 영향과 나아갈 방향-제 2차육아지원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이진희, 임진형(2004).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2), 193-215.

이현미(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재영(2011). 다문화교육 연구의 메타 분석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35**, 29-54.

정병오(2011). 장애아동의 보육실태와 보육시설 선택요인. **한국보육학회지, 11**(1), 75-101.

정순희, 최영미, 이희영(2013).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정서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193-215.

정은희, 김태강, 박윤(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과 진단·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13-141.

정정희(2006).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정희, 이효림(2013) 유아교육기관 문화적 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5-33.

_____(2014). 유아교육기관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4**(1), 251-273.

정희영(2009). 보육시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관리, 3**(2), 3-34.

조윤경(2009).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8**(1), 163-183.

_____(2010). 장애유아 통합 중심 교과목 구성에 대한 고찰: 통합 실행교사평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9**(2), 5-29.

조재규(2012). 장애영유아 부모의 보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욕구. **발달장애연구 16**(1), 49-73.

조혜진(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11**(2), 237-262.

차순호(2011). 장애전담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연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인수, 송미연(2002). 24시간 어린이집 야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5**, 157-175.

최지현, 권경숙(2012).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육아지원연구, 7**(2), 75-102.

최진화(2010). 시간연장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해시를 중심으로.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탁정화, 황해익(2012).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73-103.

한민경(2013). 효율적인 유아통합교육 실행방략.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현정환(2010).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의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235-248 .

형근혜, 허기, 홍혜경(2014). 놀이게임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탐색 -배트남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21**(1), 115-138.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옥경(2013).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81-100.

Cardona, C., M.(2009). Current trends in special education in Spain: Do they reflect legislative mandates of inclus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ecial Education, 10*(1), 4-10.

ABSTRACT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pluralistic society, the needs of educare are also more diversified in terms of educare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multi-cultural background, infant-toddlers, and children who need time extended care. Recently, as the interest in these vulnerable areas is increased, providing quality child-care services have become more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es, issues, research trends and suggeste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child care services for disabilities, multi-cultural, infant care, and time extended ca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future were provided.

▶*Key Words: child care for the disabilities, segregation, inclusion, multi-cultural child care, infant care, time extended care.*

논 문 투 고 2014. 02. 15.
수정원고접수 2014. 04. 16.
최종게재결정 2014. 04. 24.